

# 항공안전본부 구조조정센타와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간 수색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서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협정서는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색구조 관련협약 들을 고려하여 항공기 등 해양사고 시 해상 구조조정본부(이하 MRCC라 한다)와 항공 구조조정센타(이하 ARCC라 한다) 간 지원·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수색구조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행기관)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내 항공기 등 해양사고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원·협조 이행기관은 해양경찰청 MRCC와 항공안전본부 ARCC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이 협정서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수색구조구역 등에 적용한다.  
②이 협정서의 모든 규정은 양 기관이 부담하고 이행하는 관련 국제협약이나 국내법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4조(용어정의) 이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MRCC”란 선박 또는 항공기 해양사고시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해상 구조조정본부를 말한다.
- “ARCC”란 항공기 사고시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항공안전본부(항공교통관제소) 항공 구조조정센타를 말한다.
- “MCC”란 위성조난신호를 처리하는 곳으로 해양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한국위성조난통신소를 말한다.

4. “LUT”란 MCC에 설치된 위성조난신호수신처리시스템을 말한다.
5. “MCRC”란 한국방공식별구역(KADIZ)내 항공기 이동을 통제하는 한국공군 소속 중앙방공통제소를 말한다.

## 제2장 : 수색구조 항공기에 대한 비행지원

제5조(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) ①이 협정서에서 정하는 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은 수색구조만을 목적으로 한다.

②MRCC는 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을 허가한 경우 ARCC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.

1. 항공기 및 승무원의 국적
2. 승무원의 성명
3. 항공기의 등록부호 · 형식 · 비행속도 및 호출부호
4. 비행일시 및 경로(기항지, 임무구역, 비행시간, 비행방식 및 비행고도 등 명시)
5. 공지통신 주파수 및 트렌스폰더 등

③ARCC는 MRCC가 허가한 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 내용을 MCRC 및 관련 기관(부서)에 통보하여 수색구조 항공기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.

④ARCC는 외국의 항공구조대가 인천 비행정보구역내 공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계획을 접수한 경우 다음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MRCC에 통보한다.

1. 항공기 국적 및 승무원
2. 비행일시 및 수색구조 임무 범위(비행지역 또는 경로)
3. 항공기 형식 및 호출부호
4. 비행방식 및 비행고도
5. 기타 필요사항

제6조(아국 항공구조대의 비행) ①MRCC는 아국의 항공구조대가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ARCC에 통보한다.  
②ARCC는 제1항의 내용을 접수할 경우 관련국 ARCC 등에 통보하여 항공구조대의 비행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MRCC에 통보한다.

### 제3장 조난정보 등의 확인 및 조치

제7조(조난정보의 확인) ①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색구조 구역 내에서 항공기로부터 조난경보를 접수한 경우 관련정보에 대한 확인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.  
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일방은 이를 신속·정확하게 확인하여 통보한다.  
③외국으로부터 제1항 관련 정보를 접수한 양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해당국가에 통보한다.

제8조(조난신호의 처리) ①양 기관은 항공기 조난신호 수신시 사실확인을 위한 일방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.  
②일방은 조난신호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고 타방은 신속히 회신한다.  
1. 수신 조난신호의 위치  
2. 수신 조난신호의 주파수  
3. 수신 조난신호의 식별  
4. 기타 필요사항 등  
③양 기관은 항공기 등록정보 공유 및 전산화에 최대한 협력한다.

제9조(정보의 교환) ①수색구조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양 기관간 통신수단은 다음과 같다.

1. MRCC

가. 전화 : 032-883-0461

나. 모사전송 : 032-881-9595

다. 전자우편 : mrcckorea@mmpa.go.kr

라. 항공고정통신망(AFTN) : RKSSYRYX(해양경찰청 항공대 운항실)

2. ARCC

가. 전화 : 032-880-0250~2

나. 모사전송 : 032-889-5906

다. 전자우편 : aisde@moct.go.kr

라. 항공고정통신망(AFTN) : RKRRYCYX

3. MCC(LUT)

가. 전화 : 042-861-2330

나. 모사전송 : 042-861-2331

다. 전자우편 : komcc1@konet.net

②양 기관은 제1항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한다.

#### 제4장 조난신호수신단말기 운용

제10조(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유지·보수) ①ARCC에 설치된 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·보수 책임은 ARCC에 있다.

②MCC(이하 LUT를 포함한다)는 제1항의 조난신호수신단말기에 탑재된 위성조난신호 수신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설치·수정·업그레이드 등 유지·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③MCC(LUT)는 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운영 소프트웨어의 설치·수정·업그레이드 등을 할 경우 사전에 ARCC에 통보한다.

## 제11조(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운용)

①MCC는 조난신호수신단말기 운영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사실을 ARCC로부터 통보 받았을 경우 정상작동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조치한다.

②MCC는 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.

1. 관계직원 시설 방문시 교육 및 안내
2.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 방문교육 실시
3. 운용 매뉴얼 및 관련자료 제공 등

## 부 칙

1. (효력발생) 이 협정서는 200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(합의서의 개정 및 해지) 이 협정서는 매년 1회(체결일 기준 30일 전) 정기 검토하며, 협정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개정하거나 해지(30일전 문서로 제안)할 수 있으며 개정이나 해지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다.
3. (합의서의 해석) 이 협정서의 활용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4. (보관)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4. 9. 2

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관제소장

해양경찰청 구난통신과장

서기관 정보화

정보화.

총경 김용규

김용규